읽는 방법

기존 간행물 정정 및 후속 확인

이 추록의 목적

이 자료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기존 PDF 7종을 읽을 때 함께 확인할 정정사항과 후속 변동을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원본의 발행일과 당시 분석은 그대로 보존하며, 이번 확인 내용을 원본에 소급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류 정정과 후속 변동

오류 정정은 원발행 자료의 잘못된 날짜나 요건 설명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후속 확인은 발행 뒤의 공포·시행, 통계 발표 또는 한시기간 경과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맞았던 “시행 예정” 표현을 과거의 오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찾아 읽기

2쪽 금융사기 예방교육 툴킷: 가상자산 피해구제 시행
3쪽 브리프 제102호: 실손보험 계약전환 대상 정정
4쪽 브리프 제90호: 신협 상임감사 시행령과 선임 요건
5쪽 브리프 제47호: 생계비계좌 분리송금 공포
6쪽 브리프 제83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체납 공제
7쪽 브리프 제85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시금리
8쪽 리서치 제26호: 실손24 연계기관 후속 통계

확인 범위

아래 쪽수는 각 원본 PDF의 첫 페이지를 1쪽으로 센 값입니다. 이번 추록은 명시한 쟁점과 관련 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며, 원본의 모든 법률 판단·수치·참고문헌을 다시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도 이용 전에는 적용 시점과 개별 요건을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후속 확인

가상자산 피해구제는 시행 중입니다

금융사기 예방교육 교육자용 심층 툴킷 · 50쪽 중 17쪽과 49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downloads/financial-fraud-prevention-educator-toolkit-20260821.pdf

원본에서 함께 읽을 부분

17쪽 “제도 시점”과 49쪽 근거 S9는 2026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49쪽 S7에는 당시 법률 제명이 쓰여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아래의 시행 후 설명을 함께 안내하십시오.

2026년 11월 1일 확인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확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503호는 3월 31일 공포됐고, 시행령 개정령 제36729호는 9월 29일 공포됐습니다. 현행 법률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시행일 이전 피해도 구분해 봅니다

개정법 제2조 제2호와 제3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법정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4조의 지급정지 개정규정은 시행 후 해당 계좌·계정이 그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피해 발생일 하나만으로 신청이나 지급정지 가능성을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와 회수 가능성은 다릅니다

모든 가상자산 투자손실이나 사기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유형, 거래소 계정, 이전 경로, 잔존자산과 법정 지급정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12와 이용 거래소의 공식 고객센터에 즉시 알리고, 계정정보·지갑주소·거래식별번호·이전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개정문과 부칙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1359&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개정문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1448&lsRvsGubun=all

오류 정정 및 확인 한계

실손보험 전환 대상의 날짜를 바로잡습니다

넥서스 브리프 제102호 · 5쪽 중 2~5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briefing/nexus-brief-2026_102.pdf

정정 대상

원본 2쪽 도입문과 대상 원계약 표, 3쪽의 대상 설명과 수치, 4쪽 보험회사 행동항목, 5쪽 정정 이력에 반복된 “2013년 1월 이전”이라는 정책대상 설명을 바로잡습니다.

정확한 정책대상

2026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정책자료가 설명한 계약전환 할인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입니다. 가입시점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재가입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설명과 예고조문은 다릅니다

같은 날 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단독형 설계의무의 예외를 정하면서 특정 가입 연월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제7-54조 제11호의 합의해지 제도와 관련된 실손보험상품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정책자료의 “2013년 3월 이전”을 예고조문 자체의 문언인 것처럼 인용하지 않습니다.

최종 시행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확인은 9월 11일 정책자료와 예고안의 대상 설명을 바로잡는 범위입니다. 최종 고시·시행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현재 시행됐거나 아직 미시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고안의 해당 제7-63조는 고시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조항의 2027년 1월 1일 일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확인할 것

전환 여부는 초기 할인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재가입 조건, 전환 전후 보장범위·자기부담·갱신보험료, 특약 처리와 원복 가능성을 서면으로 비교하십시오. 이 추록은 개별 보험계약의 전환 권유가 아닙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1일 정책자료
https://www.fsc.go.kr/po010106/87701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71

후속 확인 및 요건 설명 정정

신협 상임감사 기준은 시행됐습니다

넥서스 브리프 제90호 · 5쪽 중 1~5쪽 특히 2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briefing/nexus-brief-2026_90.pdf

원본의 시점

원본은 2026년 9월 4일 당시 시행령 최종 공포 전의 분석입니다. 1쪽 소개와 2쪽 사실표, 3~5쪽의 미확정·추적 예정 설명은 그 시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공포와 시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인 대통령령 제36755호는 2026년 10월 13일 공포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발표, 10월 13일 공포, 10월 22일 시행을 구분합니다.

의무선임과 임의선임

의무선임 대상은 법률상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조합·단체조합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으로 읽지 않습니다

원본 2쪽의 “2천억~3천억원 조합 또는 이사회가 … 인정하는 조합”이라는 설명은 현행 임의선임 요건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닌 조합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이면서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과 이사회 판단은 선택적 요건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거래 조합의 자산 기준, 조합 유형과 예외 해당 여부, 감사 선임 안건과 이사회 의결 내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임감사 선임 여부만으로 개별 조합의 건전성이나 예금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의 정책적 제언은 발행 당시 분석으로 보존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85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6일 발표
https://fsc.go.kr/no010101/87881

후속 확인

분리송금은 공포됐고 시행은 내년입니다

넥서스 브리프 제47호 · 10쪽 중 1~2쪽 5쪽 9~10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briefing/nexus-brief-2026_47.pdf

원본의 시점

원본 제목과 본문의 “아직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1일 당시 상태를 설명합니다. 생계비계좌 자체의 시행과 초과액 분리송금 기능의 시행은 계속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의 분리송금을 정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은 2026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36748호로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는 지났지만, 분리송금 제도가 시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좌와 반환 규칙

개정령은 같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으면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분리송금을 모든 입금에 무조건 적용하는 기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계좌와 일반계좌를 구분합니다

원본이 다룬 생계비계좌의 보호한도와 관리계좌의 법적 성격은 별개입니다. 초과액이 관리계좌로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비계좌와 같은 압류금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관리계좌 지정 절차와 시행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읽는 순서

원본 1~2쪽과 5쪽의 미공포 설명, 9~10쪽의 추적 예정 항목에는 이 후속 확인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입법예고 당시 제안에 대한 평가는 그 시점의 분석으로 보존합니다. 실제 송금과 압류 문제는 계좌 상태와 개별 집행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문과 부칙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0014&chrClsCd=010202&lsRvsGubun=all

법무부 2026년 10월 6일 발표
https://www.moj.go.kr/bbs/moj/182/611141/artclView.do

후속 확인

체납 공제는 통보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넥서스 브리프 제83호 · 5쪽 중 2~5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briefing/nexus-brief-2026_83.pdf

원본과 후속 확인의 관계

원본 2~3쪽은 개정법 시행 예정일과 시행 후 통보분이라는 적용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번 추록은 시행일 경과를 덧붙이는 것이며, 통보일 기준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된 조항

법률 제21522호는 2026년 4월 7일 공포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입금일만 보지 않습니다

10월 8일 이후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새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초과금 통보일, 체납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공단의 처분 및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의 미확정 항목

원본 3~4쪽이 제기한 특정 지급 회차의 적용 여부나 공단의 세부 처리기준은 개별 안내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확인만으로 특정 회차의 모든 수급자에게 공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기록

원본 4~5쪽 근거에는 2026년 9월 2일 확인 표기가 반복됩니다. 과거 확인일 기록을 임의의 날짜로 바꾸지 않고, 이번 추록의 확인일인 2026년 11월 1일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법률 시행 확인과 과거 자료의 작성·검증 경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문과 부칙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1971

후속 확인

생계비 융자의 한시금리 기간이 지났습니다

넥서스 브리프 제85호 · 5쪽 중 2~3쪽과 5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briefing/nexus-brief-2026_85.pdf

원본의 금리 설명

원본 2쪽은 연 1.0% 한시금리가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발표와 신용보증료 연 1.0%가 별도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11월 이후에도 현재 금리인 것처럼 읽지 않도록 시점을 보완합니다.

11월 이후 안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9월 1일 발표에서 정한 한시금리 적용기간은 10월 31일까지였고, 이후 연 1.5%로 조정하도록 안내됐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에서 추가 연장 공고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추록은 해당 발표에 따른 기간 경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개별 약정은 별도 확인합니다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입니다. 개별 신청·보증·대출 실행 건에 적용되는 금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일만으로 한시금리 적용을 단정하지 말고, 실행일과 약정의 적용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의 이자절감 예시

3쪽의 원금 1천만원과 0.5%포인트 차이에 따른 1년 이자 5만원 차이는 한시 인하기간의 비교 예시입니다. 보증료와 실제 원금상환은 제외한 가정이며, 현재 신청자가 반드시 얻는 절감액이 아닙니다.

융자와 대지급금은 다릅니다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가 상환하는 대출이고, 대지급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 사실만으로 융자가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가능성과 부담을 비교하고 최신 신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원본 5쪽의 9월 발표·확인 기록은 과거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공식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2

후속 통계

실손24 후속 통계는 기관 수 기준입니다

넥서스 리서치 제26호 · 22쪽 중 4쪽 6쪽 9쪽 20쪽

원본 PDF
https://nexusfmi.com/research/nexus-research-2026_26.pdf

원본의 통계 시점

원본 4쪽과 6쪽 표, 9쪽 설명, 20쪽 근거에는 2026년 7월 30일 기준 연계율 40.4%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통계로 보존하고, 후속 발표를 별도로 덧붙입니다.

9월 28일 기준 후속 수치

금융위원회의 2026년 9월 30일 발표에 따르면, 9월 28일 기준 전체 의료기관 105,643개 중 실손24 연계 기관은 50,340개로 47.7%입니다. 확인일인 11월 1일과 통계 기준일인 9월 28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47.7%가 뜻하는 것

이 비율은 기관 수 기준의 연계율입니다. 전체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 가운데 전산으로 청구한 비중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진료 규모나 청구량도 같지 않으므로, 기관 연계율만으로 모든 환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목표와 실적을 구분합니다

연말 80~90%라는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의 “열에 넷”이라는 표현도 원 발행 당시의 통계 설명입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대상 기관 수와 집계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숫자만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확인할 것

방문한 병원·약국의 실손24 연계 여부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연계되지 않았다고 보험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추록은 후속 연계 통계만 보충하며, 원본의 모든 청구요건·서류·기한이나 정책평가를 새로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30일 발표
https://www.fsc.go.kr/no010101/87818